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8

2024. 4. 22.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4. 4. / 김지훈(민)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 2024. 4.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4.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터넷으로 한정되어 있던 청소년의 정보통신망 사용 과의존 범위를 보다 보편적인 매체인 스마트폰까지 확대하고,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각종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 → 「남양주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조례」
- 각종 용어 재정비(안 제1조~제9조)
- 올바른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세부사업 명시(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정서적 문제와 사회관계 문제를 유발하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그 대상 범위와 세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인터넷, 인터넷 중독'으로 한정되어 있던 개념을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수정하여 정보통신망 의존 대상과 범위를 광의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을 유도하기위한 세부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스마트폰이 주된 정보통신망 이용 매체로 자리잡은 현시대에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야기되는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